

\* p. 137, 010 참고자료

\* 항소장각하명령과 재도의 고안 - 대결(전합) 2025. 7. 24. 2021마654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8. 7. 29. 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69. 12. 8. 자 69마703 결정 및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등 참조).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음. 제1심 재판장은 인지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린 날과 같은 날, 피고는 인지를 보정함. 이후 항소장각하명령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피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원심은 각하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하였음.

☞ 쟁점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 보정이 가능한지에 있음. 가능하다면 항소장각하명령은 부적법하게 됨. 원심은 이를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항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고 봄.